

박형준 / 2월 / 기초 GS+ / 14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득성 평점	응시인원
535873	17.5	11	0	0	28.5	1	0.71%	6	141
535820	16.5	11.5	0	0	28	2	1.42%	5	
536249	15	12.5	0	0	27.5	3	2.13%	5	
535504	15.5	11	0	0	26.5	4	2.84%	4	
537170	14.5	12	0	0	26.5	4	2.84%	4	
535179	14.5	11	0	0	25.5	6	4.26%	4	
535659	14.5	11	0	0	25.5	6	4.26%	5	
535080	14.5	10.5	0	0	25	8	5.67%	4	
535255	13	12	0	0	25	8	5.67%	5	
535347	13.5	11.5	0	0	25	8	5.67%	4	
535258	14	10.5	0	0	24.5	11	7.80%	4	
535516	13.5	11	0	0	24.5	11	7.80%	5	
535540	14.5	10	0	0	24.5	11	7.80%	4	
535340	13	11	0	0	24	14	9.93%	4	
535357	13.5	10.5	0	0	24	14	9.93%	5	
535412	13.5	10.5	0	0	24	14	9.93%	4	
536141	14	10	0	0	24	14	9.93%	4	
536050	14.5	9.5	0	0	24	14	9.93%	6	
535211	13	10.5	0	0	23.5	19	13.48%	3	
535257	12.5	11	0	0	23.5	19	13.48%	4	
535262	13	10.5	0	0	23.5	19	13.48%	4	
535319	13	10.5	0	0	23.5	19	13.48%	4	
536036	13	10.5	0	0	23.5	19	13.48%	3	
535239	12.5	10.5	0	0	23	24	17.02%	5	
535577	13.5	9.5	0	0	23	24	17.02%	5	
535594	13	10	0	0	23	24	17.02%	4	
535529	12	11	0	0	23	24	17.02%	5	
536005	14	9	0	0	23	24	17.02%	4	
534775	15	7.5	0	0	22.5	29	20.57%	4	
535335	12	10.5	0	0	22.5	29	20.57%	4	
535525	13	9.5	0	0	22.5	29	20.57%	4	
535579	12	10.5	0	0	22.5	29	20.57%	5	
536161	12.5	10	0	0	22.5	29	20.57%	5	
545140	13.5	9	0	0	22.5	29	20.57%	4	
536592	12.5	10	0	0	22.5	29	20.57%	4	
535192	12	10	0	0	22	36	25.53%	3	
535329	13	9	0	0	22	36	25.53%	3	
535331	12.5	9.5	0	0	22	36	25.53%	5	
535333	12.5	9.5	0	0	22	36	25.53%	3	
535461	13.5	8.5	0	0	22	36	25.53%	5	
535464	12.5	9.5	0	0	22	36	25.53%	4	
535548	13.5	8.5	0	0	22	36	25.53%	5	
535617	12	10	0	0	22	36	25.53%	5	
535735	11	11	0	0	22	36	25.53%	4	
538286	13.5	8.5	0	0	22	36	25.53%	4	
535364	11.5	10.5	0	0	22	36	25.53%	5	
536014	11	11	0	0	22	36	25.53%	6	
535183	13	8.5	0	0	21.5	48	34.04%	4	
535219	12.5	9	0	0	21.5	48	34.04%	5	
535223	11	10.5	0	0	21.5	48	34.04%	5	
535327	15	6.5	0	0	21.5	48	34.04%	4	
535528	12.5	9	0	0	21.5	48	34.04%	4	
535539	11	10.5	0	0	21.5	48	34.04%	5	
536185	11	10.5	0	0	21.5	48	34.04%	4	
537211	12.5	9	0	0	21.5	48	34.04%	5	
537214	11.5	10	0	0	21.5	48	34.04%	4	
535514	12	9.5	0	0	21.5	48	34.04%	4	
535805	11.5	10	0	0	21.5	48	34.04%	5	
535224	10.5	10.5	0	0	21	59	41.84%	4	
535994	11.5	9.5	0	0	21	59	41.84%	4	
535104	15.5	5.5	0	0	21	59	41.84%	5	
535506	13	8	0	0	21	59	41.84%	5	

535654	12.5	8.5	0	0	21	59	41.84%	5
535244	9.5	11	0	0	20.5	64	45.39%	5
535358	11.5	9	0	0	20.5	64	45.39%	4
535368	11	9.5	0	0	20.5	64	45.39%	4
535462	10	10.5	0	0	20.5	64	45.39%	4
535642	13	7.5	0	0	20.5	64	45.39%	4
535662	12.5	8	0	0	20.5	64	45.39%	5
538173	12	8.5	0	0	20.5	64	45.39%	3
538175	11.5	9	0	0	20.5	64	45.39%	4
538264	10	10.5	0	0	20.5	64	45.39%	5
535316	12.5	7.5	0	0	20	73	51.77%	5
535321	10	10	0	0	20	73	51.77%	5
535882	11.5	8.5	0	0	20	73	51.77%	5
535954	11.5	8.5	0	0	20	73	51.77%	5
535991	10.5	9.5	0	0	20	73	51.77%	5
536184	11.5	8.5	0	0	20	73	51.77%	4
534532	10	9.5	0	0	19.5	79	56.03%	4
535174	13	6.5	0	0	19.5	79	56.03%	4
535460	12	7.5	0	0	19.5	79	56.03%	4
536010	10	9.5	0	0	19.5	79	56.03%	5
535661	14.5	5	0	0	19.5	79	56.03%	6
536027	11	8.5	0	0	19.5	79	56.03%	4
536071	12	7.5	0	0	19.5	79	56.03%	5
534609	10	9	0	0	19	86	60.99%	4
535253	10.5	8.5	0	0	19	86	60.99%	3
535294	11.5	7.5	0	0	19	86	60.99%	4
535465	14	5	0	0	19	86	60.99%	3
535473	12	7	0	0	19	86	60.99%	5
535498	11.5	7.5	0	0	19	86	60.99%	5
536093	9.5	9.5	0	0	19	86	60.99%	5
535356	11	8	0	0	19	86	60.99%	5
535969	11.5	7.5	0	0	19	86	60.99%	5
535161	11	7.5	0	0	18.5	95	67.38%	4
535218	11.5	7	0	0	18.5	95	67.38%	6
535307	10.5	8	0	0	18.5	95	67.38%	6
535310	11.5	7	0	0	18.5	95	67.38%	5
535345	7.5	11	0	0	18.5	95	67.38%	5
535470	10	8.5	0	0	18.5	95	67.38%	4
535487	11.5	7	0	0	18.5	95	67.38%	4
535651	10	8.5	0	0	18.5	95	67.38%	5
535670	10.5	8	0	0	18.5	95	67.38%	4
535837	10	8.5	0	0	18.5	95	67.38%	4
534515	10.5	7.5	0	0	18	105	74.47%	4
535295	13	5	0	0	18	105	74.47%	4
535613	10.5	7.5	0	0	18	105	74.47%	4
536567	10.5	7.5	0	0	18	105	74.47%	5
535375	10.5	7	0	0	17.5	109	77.30%	3
535469	11	6.5	0	0	17.5	109	77.30%	4
538386	11	6.5	0	0	17.5	109	77.30%	5
535488	14	3	0	0	17	112	79.43%	4
535379	10	6.5	0	0	16.5	113	80.14%	4
535584	10	6.5	0	0	16.5	113	80.14%	4
535523	8.5	8	0	0	16.5	113	80.14%	3
535155	10.5	5.5	0	0	16	116	82.27%	5
535337	7.5	8.5	0	0	16	116	82.27%	4
536108	11	5	0	0	16	116	82.27%	3
536572	11.5	4.5	0	0	16	116	82.27%	4
536571	9.5	6	0	0	15.5	120	85.11%	4
535325	11.5	3.5	0	0	15	121	85.82%	4
535647	9	6	0	0	15	121	85.82%	3
536170	15	0	0	0	15	121	85.82%	5
535453	12.5	2	0	0	14.5	124	87.94%	5
535864	14.5	0	0	0	14.5	124	87.94%	4
535215	6.5	7.5	0	0	14	126	89.36%	5
536181	9.5	4.5	0	0	14	126	89.36%	5

535840	8	6	0	0	14	126	89.36%	5
535874	7	6.5	0	0	13.5	129	91.49%	4
535555	6.5	7	0	0	13.5	129	91.49%	5
535596	7.5	6	0	0	13.5	129	91.49%	4
536054	11.5	2	0	0	13.5	129	91.49%	4
535217	2.5	9.5	0	0	12	133	94.33%	4
535586	12	0	0	0	12	133	94.33%	5
535732	11.5	0	0	0	11.5	135	95.74%	5
534529	2.5	9	0	0	11.5	135	95.74%	5
535349	9	2	0	0	11	137	97.16%	4
535819	10.5	0	0	0	10.5	138	97.87%	4
538047	8.5	1.5	0	0	10	139	98.58%	3
535860	10	0	0	0	10	139	98.58%	5
535742	5.5	3	0	0	8.5	141	100.00%	4

박형준/2월/기초GS+/14회/1번	채점자
	윤영우

1. 전반적인 총평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을 동시에 청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논점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설문이 총 5개로 비교적 많으므로 시간 관리에 유의하셨어야 합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에서 묻는바인 동시 계속 가부와 처리 방법에 대해 각각 중목차를 잡아 작성하셔야 했습니다.

다만, 조문과 판례는 작성하였으나 사안 포섭을 하지 않은 답안이 다수 있었습니다. 사안 포섭을 간단히 하고 넘어가시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 짚고 넘어가 주세요.

(2) 설문 2

제186조 조문을 누락한 답안이 다수 있었습니다. 특허법원의 대응을 물어봤으므로 제186조를 선결 작성함으로써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안 포섭을 하지 않은 답안이 많았습니다.

판례에 대한 검토를 따로 작성한 경우 점수를 드렸습니다.

(3) 설문 3

심결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답안이 몇몇 있었습니다. 무효심판의 특허법원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소급효가 생긴 것이므로 무효심판 심결에는 정정 전 특허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위법이 있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4) 설문 4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정정심결 확정이 재심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례와 검토를 키워드를 포함하여 풍부하게 작성하신 경우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5) 설문 5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판례의 키워드인 '정정의 대상' 을 포함하여 포섭하신 경우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각하 '판결' 로 작성한 경우가 많았는데, '판결' 과 '심결' 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 주세요.

3. 소결

무효심판과 정정심판 논점은 A급으로 손꼽히는 논점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누락하신 논점들은 기본서나 판례집에 표시하고 여러 번 복습해 주셔야 합니다.

각 설문에 대한 사안 포섭을 빼먹은 답안이 다수 있었습니다. 문제에 사실관계는 거의 없으나 간단히라도 사안 포섭함으로써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박형준/2월/기초GS+/14회/2번	채점자
	윤영우
<p>1. 전반적인 총평</p> <p>무효심판과 통상실시권자 관련 논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각 설문의 묻는바가 명확하여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통상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문제였습니다. 배점상 판례를 두껍게 작성하셔야 했습니다.</p> <p>‘실시료 지급 의무’ 를 포섭했는지에 따라 사안 적용에 대한 점수를 달리 부여했습니다.</p> <p>(2) 설문 2</p> <p>마찬가지로 판례를 두껍게 작성해야 하는 설문이었습니다. ‘원시적 이행불능 사유’ 등의 사정을 포섭했는지에 따라 사안 적용에 대한 점수를 달리 부여했습니다.</p> <p>3. 소결</p> <p>통상실시권자와 무효심판 논점은 A급 논점이므로 판례를 잘 암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안 포섭 시 작성해야 할 키워드도 잘 체크해 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빠뜨린 키워드 등은 기본서나 판례집에 잘 체크해 놓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해주세요.</p> <p>이번 주도 답안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p>	

35

[특정-1] (특허법도 이하, 법이라 한다.)

2. 심판

1. 무효심판, 정정심판 외의

① 무효심판의 부실특허를 소멸시키는 (법133)

② 정정심판의 발명을 정정하는 (법136) 심판이다.

2. 동시제출 가능 여부

법136 ②에 따르면 무효심판 계속 중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정정심판 계속 중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동시제출이 가능하다.

3. 처리방법

1) 법104-판례

법원이 항소중인 재항에 의해 제한다.

(2) 심리방법-판례

① 정정심판 취지 등 정정심판을 무효
심판에 우선해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②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 판결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③ 무효심판을 먼저 심리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에 의해 제정된 법 제 21 조
특허법 제 21 조

④ 이 조항은 특허법 제 21 조 제 2
항목에 의해 특허청이
특허청에 등록 신청한 발명
특허청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사실 및 증거

특허청이 제 21 조 제 2 항목에
특허법 제 21 조 제 2 항목에
제정된 법 제 21 조 제 2 항목에
제정된 법 제 21 조 제 2 항목에

2. 사실 (2)

1. 특허청이 제 21 조 제 2 항목에
특허청에 의해 제정된 법 제 21 조 제 2 항목에
제정된 법 제 21 조 제 2 항목에
제정된 법 제 21 조 제 2 항목에

2. 특허청 제 21 조 제 2 항목에 - 조항 제 2 항

① 특허청이 제 21 조 제 2 항목에
제정된 법 제 21 조 제 2 항목에
제정된 법 제 21 조 제 2 항목에
제정된 법 제 21 조 제 2 항목에

② 특허청이 제 21 조 제 2 항목에
제정된 법 제 21 조 제 2 항목에
제정된 법 제 21 조 제 2 항목에
제정된 법 제 21 조 제 2 항목에

심사심판청구하더라도 심사후 명세서
 등에 따라 판결해 오라고 요청할 경우
 심사위원의 내담,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심결 취소소송의 적체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등을 종합적 고려 해
 변론종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3. 사실 및 결론

제반사실을 고려하여 심사심판의 결과를
 기각되거나 변론을 바로 종결하거나
 합리적으로 소청 가능하다.

Ⅳ. 결론(2)

1. 관련 법리

1) 심결소취주의 - 법 126 ⑥

심결 취소소송을 심결에 내린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2) 심사심결 소청 - 법 136 ⑩

심사심결에는 소청이 있다.

2. 무효심결



정제 심혈을 스텝이 있기 때문에 심혈은
정제 전 상태를 심판한 위법이 있다.

3. 등허법원의 처리

1) 공개 판례

1) 정제의 스텝으로 인해 심혈정제에
심판대상은 잘못 등재한 위법이
있다.

2) 등허법원은 제정된 공개 방법을
심판의 기준은 하여 심혈 정제를
판단할 수 있다.

2) 조항 판례

1) 정제 심혈 개입수유 수조에
1) 등허의 제제에는 정제 방법과
실질적 동일성 유지를 조항 하므로
정제 수형을 조항 후 등재된
내용을 구분한다

2) 제정된 조항이 사실상
법률적 심리, 판정 대상이 된다.

3) 검토

본래의 일회적 개조 위해 위 판례의
예외가 있음 하도록 되어 있다.



(4) 사실 및 자료

심판여부를 관할 등재한 심결에
위반이 있어라도 심결을 취소하지
않고 등허명원은 개개 허탈자의
무효사유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실문(4)

1. 관할 조문

(1) 행정소송법 제 83조 2항

심결취소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 451조 1항 8호가 준용된다.

(2) 민사소송법 제 451조 1항 8호

판결의 기호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된 경우, 재심사유이다.

2. 재심사유

(1) 중개 판례

중개 심결 행처이 재심사유가 될수있다.

(2) 전합 판례

1) 다수의견

① 특히결정을 판결 기호가 되는데 아니라
심리, 판단 내용일 뿐이며

정제 심결 항제에 등허법으로 행정적
소속으로 변경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심결지도를 이유로

② 제정 심결 항제도 심결 취소심판청구에
재심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2) ~~판결취소~~ 별개 사건

① 제136 ⑩ 명문라

② 등허권자 불이권 불출원제

고려할 때 재심 사유를 이유로

곧바로 등허법정이 취소해야 한다.

(3) 심결

정제 심결 항제에 대해 무제항제로

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불공평하다

예외적으로 후회 사안까지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살피더라도 재심 취리에 맞지

않아 되고, 이를 통해 제정 항제에

실현된다고 하기도 어려운 바,

조항 관계의 '다수항제' 이 타당하다.

(4) 사안 및 결과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항제 조

항제지도를 가리켜 ~~취소~~ 판결해야 한다.

3. 실용(5)

1. 무효심결의 소급효 - 법133③本
무효심결 항재외의지, 등재는 소급적효를 소멸한다.

2. 유제정

법136④ 및 제137에 따르면 무효판결 항재 후에도 재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효심결 항재 전에 미리 청구된 재심심판에 대한 유제가 존재한다.

3. 판례

무효심판 항재 시 소급 소멸 의의로 무효로 된 등기 재심 심판은 그 재심대상이 없어지므로 재심 이익이 없어 불적법하다.

4. 점득

전항 판례에 따르면 판례가 타당하다.

5. 다양한 것

재심의 대상이 없음으로, 심판항을 재심 심판 청구이익 소멸로 '무효심결'을 소급한다.

[끝]



[문제-2]

1. 실용 (1)

1. 우호심판 청구인 자격 - 제133①
 우호심판으로 공익상 부실 등 허를 소멸시키기
 위한 제132 조 제 2항 외에 이해관계인인
 청구인 수 있다.

2. 항소

- ① 소시권자는 등허권의 이해를 받을 명제가
 없이 이해관계가 부재된다는 항소판
 ② 소시권 부재함에 있어 실체적
 이유로 우호심판청구를 할수없다는 조해가 있다.

3. 판례

(1) 중개 판례

- ① 제133① 이해관계인 아닌 등허권자로써
 '조각의 대해를 받거나 받을 명제가 없이'
 직접, 현실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임을
 알하는 것이냐는 이유
 ② 통상 소시권자는 조각의 대해를 받거나
 받을 명제가 없다는 이유로 이해
 관계를 부재하였다.

(2) 조합 관계

- ① 이해관계인이라 할 때 특허의 권리권속은 '발명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불이익이 없다' 소명할 필요 없이 직접, 또는 간접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 ② 특허법원에 같은 권리의 출원을 제1, 2차에 하거나, 출원권도 인정된다.

(3) 관계 종료

특허권 자체가 없는 경우 실권자의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점도

특136⑤ 무효는 실권자의 무효행위 철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권리자에게 소명할 필요와 그 절차가 타당하다.

5. 차이 및 점도

3% 실시요건 부양은 실권자 2% 청구인 3%가 있으므로 무효행위 철회는 부양하다.

II. 실습(2)

1. 문제점

무효심결의 확정에 따라 특허가 소취된다
신설하다 이 무효 상예로 실수로의 말문을
찾아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판례

(1) 계약무효 판례

- ① 특허무효 원고가 최종판결 확정된
후에 갈취되나 (제133호)
- ② 특허 실시 계약 체결 후 계약대금
특허가 무효로 원상회복 청구 특허
법상 실사 계약의 계약 체결시점의
무효로 되는 지는 특허권의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행불능 판례

- ① 실사계약 체결시 특허권자를 실사계약의
실시에 대해 손해배상, 중리 등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무효 후에 계약자의 특허법규에
실사권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
③ 특허무효의 소취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행해되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특허청에서 실시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되었다고 본다.

(3) 특허 청구

① 원시권 이행능력이 있거나

② 실시계약이 별도로 무효사유가
없으면

③ 실시계약이 유효한 기간에
정당하게 특허를 실시권자에게
부양하도록 할 의무가 없다.

3. 권리

실시권자는 계약 당시 목적했던 이익을
모두 얻었으므로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4. 사실 및 논리

실무에 원시권 이행능력 보유나 실시계약
자체의 무효사유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이
없다.

따라서 그를 법원에 기지급한
실시권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문]

[이 하여 백]

< 문제 17 >

I. 실문(1)

1. 관련 규정

1) 무효심판 의의, 취지 - > 법 133

공익상, 하자 있는 특허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2) 정정심판 의의, 취지 - > 법 136

특허권자 방어권 보장상 인정되는, 독립된 심판에서

특허발명을 변경, 정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논점

① 정정심판의 시기적 제한

정정이 가능한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정정심판 처치가

불가능하다 (> 법 136 ②)

② 소항요 중립 문제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은 모두 소항요를 가진다. (> 법 136 ⑩, > 법 133 ②)

3. 동시계속 거부

① 정정 심판 계속 중 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

② 무효심판이 심결후에도 계속 중 정정심판 제기된 경우

③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의 동시계속이 가능하다 (> 법 136 ②)

4. 바람직한 처리 방법

1) > 법 164 조의 성질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 합리적인 재량이 의해 정하는 것이라 하였다.

2) 시리 방법 - 취시회

정정심판제도 취지상 정정심판을 우선하여 심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하여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 판단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또 우선심판을 먼저 심리하는 경우에도 그 판단 대상은 정정심판 청구 '전' 특허발명이고, 이러한 행위를 우선심판과 정정심판 심결최소요건이 심판원기 동시 계속 중이든 적용 된다.

3) 시안

취시회 태도에 따르면 정정심판을 우선하여 심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반드시 먼저 심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II 실문(2)

1. 심결최소요건 의미. 취지 - 법 186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이 위법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제도이므로,

2. 우선심판 특허법원 계속중 특허법원의 취지 - 전항취시회 대의전

① 특허법원은 심판 진행 중 특허권자에게 자정여기함을 적절하게 부여하며 심결권자에게 적절할 절차적 보장. 이(주)시등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권자가 정정 후 명세서에 따라 판단해 달라는 요청한 경우



정정사유에 관계없 내용, 정정이 받아들여지면 심결처분종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리거 정정내역, 정정기일이 보장되었는지 여부, 정정심판 제기의 주목적이 소송지연을 위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3) 결론

특허법원은 정정이 받아들여지면 심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소송지연이 초래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

II. 설문(3)

1. 심결의 수법 여부.

1) 정정심결의 요건 - 특 136 ⑩

정정심결은 요건을 가진다.

2) 시안

정정의 요건을 인하여 심판대상물 잘못특정하게 된 시안전문제에 위반 한다.

2. 특허법원 조치

1) 종래 취사체

① 정정의 요건을 인하여 무효심판 심결에서 심판대상물 잘못 특정할 수 방법이 있다.

② 정정된 제거방기를 심결의 기전인 하여 무효사유를 판단할 수 있다.



2) 처분 전항 취소제 변경

- ① 정정신청 재심 사유에서 ②항하의 정정제도는 종전 특허법령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하
- 는 것으로 정정신청은 정정 후 명세서 등의 내용을 수정하는
- ③ 정정된 명세서 등이 신심심 법원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된다.

3) 검토

논리적으로는 심결을 취소함이 타당하나. 본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취소제의 채택은 인음 타당하다.

4) 시안 해결

특허법원은 무효심판 심결취소로 계속 중 정정신청이 된지 불확정된 경우. 정정된 명세서를 기준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IV. 설문(4)

I. 재심 사유 조부

1) 종래 취소제

민사소송법 제 492조 1항 후의 소정의 재심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2) 전항 취소제 미수이전



① 특허결정은 판결의 기판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 판단의 대상일 뿐이며, 행정심결의 확정으로 특허발명이 확정적. 안정적이라고 보지 못한다. 단정할 수 없고, 불쟁사면 등을 이유로 ② 행정심결 확정은 무효상태 심결후소송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 412조 제 1항 제 8호 제 2항 제 2호를 규정하지 못한다.

3) 전항 취소에 별개의점

① 특허법 제 136조 1항 본문. ② 특허권자 방어진 박탈 문제 등을 연구할 때, 재심사유를 이유로 본항을 특허법원에 인용해야 한다.

4) 검토

① 무엇보다. 또 다른 행정심결이 확정되면 특허발명이 또 다시 변경될 수 있고 이렇게 확정된 행정심결 등은 또 다른 행정무효심결 확정에 의해 그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② 이와 같은 행정심결. 행정무효심결 확정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재심사유를 인정하게 되면 행정안정성을 예외적으로 복원시켜서라도 구체적인 정의를 실현하려는 재심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전항취소에 따르는 이의청이

2 시안의 경우

1) 무효상태 판단대상 - 취소제

행정청 결정사실 등을 대상으로 재보상을 판단해야 한다.



2) 결론

무효성판 심판취소판결이 대법원의 계속 증에 정정성권이 먼저 확장된 경우. 정정권 명세서를 대상으로 무효성판 사건에 대해 상고하여야 한다.

3 V. 설문 (5)

1. 관련 규정 - 3차 131(1) 단서

- ① 무효성권이 확장된 경우 더 이상 정정성권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이때, 무효성권 확장 권이 이미 청구된 정정성권 청구기. 병합한 기청이 없는 문제가 된다.

2. 취지

특허법 제 122조 3항에 의하면, 무효성권이 확장된 경우 특허청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특허의 정정성권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게 되어 정정의 이익이 없다.

3. 비판

정정성권이 확장되는 경우, 무효성권이 재심사청가 발생하므로 (인사심사법 45조 ① 8호) 정정의 이익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4. 결론



정정심결의 효력을 무효심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보기 어렵고, 부(재)심결의 효력을 인정한다.

5. 시안

정정심판이 심판원에 계속 중 무효심결이 효력된 경우
그 정정의 대상이 없게 되어, 정정을 누릴 이익이
없으므로 심판원은 정정심판을 각하해야 한다.

65 <문제 27

1. 실문(1)

1. 무효심판 의미. 제외 - 7항 13항

공익상, 당사자가 이를 실현하려는 제권이다.

2. 청구인 자격 제한 - 7항 13항 ①

① 이해관계인 또는 당사자만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 인하는 상대방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는 제거나
철회방지를 위한 것이며, 당사자는 공익에 대응하지 않음.

3. 문제점

실시권자가 무효심판 청구인 자격을 갖는지 문제가 된다.

4. 함의

- ① 실시권자가 정당권원을 가져 특허권의 대항을 받음
영역이 넓어 이해관계가 확장되거나,
- ② 실시계약은 특허권이 타인에게로 전제된 채결하는 것이므로
목적적 분쟁행위가 있거나,
- ③ 실시권자의 무효성판 청구는 신뢰청이 반하하는 이유로
무효성판은 제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5. 취소사유

1) 종래 취소사유

- ① 국가는 특허법 제 137조 (항의 이해관계인)이란 그 권리를
부러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도록 영력이 있어 그 소멸에
관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 ② 특허청사는 부러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도록 영력이
없다면 이유로 실시권자의 이해관계를 부정함이 일반적이다.

2) 전항 취소사유

- ① 특허법 제 137조 (항의 이해관계인) 범위
 - i)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권속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을 받거나 받도록 영력이 있는
그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고, 제2항에 따른
- ② 결론 - 실시권자 적용
이러한 범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번호

실시권이 특허권자로부터 권리대항을 받는 명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가 인정되었다 볼 수 없다.

③ 논거

가) 법률상 불이익 - 실시권자에게는 실시권 지위나 실시 방법
등의 여러 제한 사항이 부과되는 것이 필연적 이므로,
실시권자는 무효성을 통해 이러한 제약을 벗어날 수 있고,

나) 목적적 부재성의 관련 -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 여부를 기록지 놓겠다면 의사 표시하였다고
판정할 수 없다.

6. 검토

특허법 136 조 단서 규정인 실시권자의 무효성판 청구인 자격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규정임을 고려할 때, 전항 취제가 타당하다고

7. 시안

같은 무효로부터 효용실시권 설정받은 실시권자로서 전항취세에
대응할 때 이해관계인에게 해당하며, 전항취 전용실시권자 등이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 보이지 않으므로 무효성판 청구인 자격을 만족한다
따라서 그의 경우 상대적 제1항 무효성판은 주변 하에

II. 설명(2)

1. 무효성결의 취지 - 제13조 ② 본문
특허를 무효로 하는 데에 상점이 특허된 경우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문제점

무효성결 확정으로 인해 가지급 실시권의 반환이 문제가 된다.

3. 취지에

1) 계약 무효의 독립적 판단

① 특허가 무효로 특허된 경우 특허권은 제13조 ② 본문 4항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있어 있으므로 간혹이나, ②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특허된 경우.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시 특허 무효로 된다는 특허권의
취지에 반하여 판정해야 한다

2) 이행불능 관련

①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대용
실시에 대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② 특허가 무효로 특허되기 전에는 제13조의 특허침해
실사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③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이런 한 특허무효 상항으로 불구하고 원상회복 이행 불능에
있을 수 없다. ④ 다만 무효로 특허된 경우 특허

실시계약은 후발적 이행불능 상환기 빠지게 된다

4. 결과

[예시배우 2가지] ① 실시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이 있거나,
 ②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로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기지급 실시권에 대해, 특허권자가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권자를 복수 이익 지급하는 실시권 등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복수를 실시권자에게
 복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논란

그런데 이를 상대를 청구한 무효상태에 인용되어 무효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 2 가지의 실시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 이었다거나,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로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같은 무효 상태를 기지급한 실시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더백]